

□ **신고개요**

- 신고규정 : 해외건설촉진법 제13조, 시행령 제17조, 시행규칙 제15조
* 허위통보 또는 미통보시 과태료(200만원 이하)가 부과될 수 있음
- 신고기간 : 2024.7.1.~7.31(법정 신고기간)
- 신고방법 : 해외건설e정보시스템(<http://yes.icak.or.kr>) 온라인 신고
- 메인메뉴 상단 '해외공사상황통보' → 시공/준공/타절 통보 클릭
- 대상공사 : 2024.6.30.자 기준 시공중인 해외공사
(공기 1년 미만, 설계·FS·조달 프로젝트 신고대상 제외)

□ **대상공사 조회 및 신고 절차**

- ① 해외건설e정보시스템(<http://yes.icak.or.kr>) 접속
 -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신규 계정을 만들어 신고(신규 가입)
* 로그인 계정에 귀속된 담당자 연락처로 신고문서 처리상태가 자동으로 통보됩니다.
- ② 대상공사 목록 확인 및 공사별 신고 내용 작성·저장
 - * 대상공사 목록 확인: 해외건설e정보시스템 접속→'해외공사상황통보'→'시공경과통보'→하단 [시공경과등록] 버튼 클릭
 - ※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중도 타절된 경우 : 하단의 [타절등록] 버튼을 통해 공사목록 확인, 타절신고로 대체하여 신고(이후 절차 동일)
 - ※ 신고대상 공사가 준공된 경우 : '준공결과통보' 메뉴를 통해 준공 신고로 대체 가능(이후 절차 동일)
- ③ 작성내용 최종 확인후 상단 [제출]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문서 제출
 - '시공경과통보 접수'목록 우측 '상태' 표기에서 문서처리 현황 확인 가능
 - 「보완」상태일 경우 신고내용 보완 후 다시 제출
 - 신고문서 처리 완료시 '시공경과 완료' 목록에서 확인 가능

□ **참고사항**

- 미수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'미수금 대손처리' 항목 입력
- 미수금, 유보금, 클레임 금액 등 수령 잔액이 있는 경우, 타절 및 준공통보 되었더라도 시공경과통보 대상에 포함됨
- 신고문서 상태가 「작성중」 또는 「보완요청」 인 경우 미신고 상태이므로 반드시 [제출] 버튼을 통해 신고문서 제출 필요